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등의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안 제15조의4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

부 칙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4(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u> <u>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u> <u>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u> <u>말한다.</u> <u>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u> <u>저상버스등의 승무원</u> <u>2.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u> <u>3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u>